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93

발의연월일: 2025. 2. 17.

발 의 자:허종식·강선우·김교흥

김동아 · 노종면 · 문금주

문대림 • 박성준 • 박용갑

박찬대 • 유동수 • 이용우

이재관 · 이해식 · 이훈기

정일영 • 조계원 • 주철현

한민수 어성무 의원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강·유지·보수 및 준설 등을 하는 사업을 항만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를 국가항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항은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등으로 구분되고, 하위법령에서는 항만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의투기를 위한 시설(이하 "준설토 투기장"이라 함)은 기능시설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준설토 투기장 설치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 주민과 어 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는 만큼 준설토 투기장 설치로 발생한 수 익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의 여건 및 특성에 맞도록 활용하기 위해서는 준설토 투기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그런데 국가항에서 시행하는 준설토 투기장 설치사업은 그 시행 주체가 해양수산부장관이며, 준설토 투기장은 국유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준설토 투기장 설치를 위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준설토투기장이 속한 시·도의 시·도지사로 하여금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적·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및 준설토 투기장의 효율적·체계적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단서 신설 등).

법률 제 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다목8)를 9)로 하고, 같은 목에 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항만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浚渫土)의 투기(投棄)를 위한 시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서 제2조제5호다 목8)에 따른 준설토의 투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이 속하는 시·도의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	5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u>.</u>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	
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시설	
로 한정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지원시설	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항만개발사업에서 발생
	하는 준설토(浚渫土)의
	투기(投棄)를 위한 시설
<u>8)</u> (생 략)	<u>9)</u> (현행 8)과 같음)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항만개발사업은 관리청이	①
시행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 해양수산부</u>
	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
	으로서 제2조제5호다목8)에 따

	른 준설토의 투기를 위한 시설
	을 설치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이 속하는 시ㆍ
	도의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